2016년

익산특수교육운영계획

2016.2.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목 차

Ⅰ. 2016 익산교육의 방향 ····· 1

Ⅱ. 전북교육의 기본방향 ····· 2

Ⅲ. 전북특수교육의 운영방향 ····· 3

Ⅳ. 중점 추진과제 및 사업개요 ····· 4

Ⅴ. 익산시 특수교육 현황 ····· 5

Ⅵ. 중점 과제별 추진계획 ····· 6

1.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 6

2. 특수교육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 24

3. 장애학생 인권우호적 분위기 조성 ····· 53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강화 ····· 66

Ⅶ.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 73

훌륭한 교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수업혁신이다.

Ⅰ 전북교육 기본방향

■ 교육비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 교육지표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

Ⅱ 익산교육 기본방향

전북교육 지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익산교육 지표

행복한 익산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실 천 방 향

○ 학생에게는 비전과 적성을
○ 교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중 점 시 책

○ 인성·인권교육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
○ 참된 학력신장을 위한 개성있는 교육과정 운영
○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

특색·역점 사업

○ 특색사업 : 마· 백 전통문화 계승· 발전교육
○ 역점사업 :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꿈을 심는 교육

인 간 상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형 인간

Ⅲ 전북특수교육 운영방향

장애학생의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 확대

추 진 방 향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 장애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통합환경 조성
○ 특수교육협력체제 강화

중 점 추 진 과제

○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 특수교육 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우호적 분위기 조성
○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Ⅳ 익산특수교육 운영방향

전북특수교육지표

장애학생의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 확대

⇧

익산교육지표

행복한 익산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

익산중점추진과제

○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 특수교육 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우호적 분위기 조성
○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V 추진과제 및 사업개요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특수교육 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건강장애 및 화상강의 수강학생 지원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연수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조정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체계 확립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강화 ▷순회교육 운영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장애학생 인권우호적 분위기 조성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교육 강화 ▷예·체능 활동 지원 강화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장애학생 안전강화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지원

Ⅵ 익산시 특수교육 현황

1. 특수학교 현황

학 교 명	학 급 수(학 생 수)						비고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계	
전북혜화학교	1 (2)	11 (51)	7 (59)	8 (65)		27 (177)	
전북맹아학교	1 (0)	6 (19)	3 (11)	4 (32)		14 (63)	
계	2 (2)	17 (70)	10 (70)	12 (97)		41 (240)	

2. 특수학급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 교	2	29	5	4	40
학 급	3	31	8	8	50
학생수	12	125	52	77	266

3.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구 분	위 치	직원수	규 모		면 적
			실 명	실 수	
익 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북 익산시 인북로 175	팀장 1 특수교사 1 순회강사 1 치료사 1 특수행정실무사 1	사무실	1	126.7㎡
			언어치료실	2	51.84㎡
			진단평가실	2	63.36㎡
			감각통합실	1	51.84㎡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1 기간제교사 3 직무지도원 3	자료실	1	43.2㎡
			세미나실	1	129.6㎡
			직업훈련실	2	99.36㎡
			조리실	1	51.84㎡
			컴퓨터실	1	47.52㎡
계		12		12	1.144.77㎡

VII 과제별 추진계획

1.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가 목표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직무 만족도 제고를 통한 특수교육 성과 극대화

나 추진 계획

-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교육환경 개선
- 장애유형과 정도,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지원
-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강화

1-1	❖ 특수교육대상 영 · 유아 교육 내실화
1-2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3	❖ 건강장애 및 원격수업 수강학생 지원
1-4	❖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1-5	❖ 특수교육 연수 지원
1-6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
1-7	❖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조정

Section_1-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1 추진목적

○ 장애의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서비스를 통해 2차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하여 잔존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가계 부담과 사회적 비용 절감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동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동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2 추진내용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

가) 만 3세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이행 철저

-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유치원 취원 희망 시 법적인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우선 입학

나)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의 가정방문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 영아 선정 시 필요한 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 결정
- 주당 2시간 이상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공립 월 90천원, 사립 월 361천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만3~5세)

※ 세부내용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 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

라)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취학유예 및 면제 기준 강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반드시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법 제19조2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

장애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의무교육 이행 독려

가) 관내 유관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의무교육 이행 독려

나)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장애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취학유예 및 면제 관련 안내

- 취학유예 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지원 중단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장애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담당자 연수: 상반기 내 연1회 실시
- 특수교육대상 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유치원/센터) 연수 실시
  2)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적령기 의무교육 이행 독려

②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전이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2017 취학설명회 개최(7월중)

♠ 관련업무계획 ♠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지원 계획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공.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만3-5세)
○ 지원내용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비 지원
○ 예 산 액 : 205,740천원(전액 지방비)

1. 지원대상

가. 만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 유아

○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

※ 공.사립 유치원이 아닌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어린이집 등)

2.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	선정·배치 결과 통지	▶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	▶	무상교육비 지원	▶	정산서 제출	▶	무상교육비 지원 실적 제출
학부모 → 유치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유치원		유치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유치원		유치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3. 지원 기준

가. 공립 : 1인 월 90천원 이내 실비 지원 **(교육활동경비)**

나. 사립 : 1인 월 361천원 이내 실비 지원 **(교육활동경비)**

다. 지원 방식 : 학기별 지원

유의 및 주의 사항

① 취학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무상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초등학교 취학유예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Section_1-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추진목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 도모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2 추진내용

1)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편성·운영
- '특수학급 교육과정' 또는 '특수교육 운영계획' 등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통합교육 내실화 노력
- 학생 수준에 적합한 통합교육 참여계획 수립·운영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장애학생지원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 노력- 법적 의무(제21조)
- 특수학급 학생 통합학급 적응기간 자율적으로 운영

2)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수준에 맞는 통합교육계획 수립·운영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통한 통합학급 수업참여 범위 결정
- 일반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통합학급 교수-학습 활동 참여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교사와의 협력 강화
- 통합학급 교수-학습 수업방법(협력교수, 협동학습 등) 개선에 공동 노력

3) 통합학급교사 책무성 강화

-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배치 기준 준수 및 연수 이수 철저
- 통합학급 담임교사 배치기준 :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대학원과정의 특수교육전공 중인 자, 특수교육관련 직무연수 이수자를 우선 배치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학년 유의

- 2016학년도는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2016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학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적용 학년에 유의하여 운영

【 2016학년도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 학년 】

구 분	적용 학년
2016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치원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1~6, 중1~3, 고1~3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2013-7호, 2013.12.18.)반영내용

- 선택 교육과정의 일반 고등학교 교과별 필수이수단위 변경 적용,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 확대 등
- '한국사' 6단위 이상 이수 및 2개 학기 이상 편성 확대 등
-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교 체육 필수이수단위 10단위 이상 조정
- 중학교에서 주당 2시간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1시간 체육시간으로 대체 가능
- 선택 교육과정 보통 교과에 '논술'과목 신설(추가)등

- 2016 개정 특수교육과정의 2016학년도 시행 주요내용

학교급	주요 내용
유치원	1일 4~5시간 기준으로 편성 운영
중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희망학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선택적으로 운영
고등학교	2013-7호의 전문 교과를 2016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Ⅱ실무과목으로 대체 편성 가능

5) 신규-경력 특수학급 교사 간 특수교육 컨설팅 활성화 노력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적극 활용

6)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익산특수교육 운영 계획 설명회 실시

- 시기 : 2016. 2월중
- 대상 : 관내 유、초、중、고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7)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진)학 설명회 개최

- 시기 : 2016. 6~10월중
- 대상 : 관내 취(진)학 예정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2016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용 중 2016년 시행 사항 반영
(교육부 고시 제 2016-81호)
- 유치원 :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운영
- 중학교 : 특수학교의 경우, 희망하는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운영
- 고등학교 : 2013-7호의 전문 교과를 2016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Ⅱ 실무과목으로 대체 편성 가능

Section_1-3 건강장애 및 화상강의 수강학생 지원

1 추진목적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및 치료효과 증진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동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추진내용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위탁운영

- 만성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학교 위탁운영 지원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적응 도모
-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원격수업 수강학생 지원

-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 연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의 건강장애 학생 및 보호필요학생에게 원격수업 수강 지원

건강장애 학생.보호필요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담당자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실시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는 생활기록부관리지침 준수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작성 지침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병원학교 담당자 및 보호자 교육 강화

건강장애 선정 및 재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의료적ㆍ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선정

※ 건강장애 선정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先교육 지원 가능
- 정신질환으로 인한 학생이 건강장애로 선정되거나,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관련학교에 안내

  ※ 정신질환학생은 건강장애대상자 선정불가

건강장애 담당교사 연수 및 지원

①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에 협조

②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활용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방지하도록 교원 연수 시 전달

③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 자체 연수 실시하도록 지원

④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안내 등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관련 상담 시 친절히 응대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

⑤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호자 등의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에 적극 참가

②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매뉴얼의 보건실, 도서관 상시 비치 협조

③ 교직원들에게 건강장애학생 학적 관리 및 원격수업 이용방법 안내

④ 건강장애학생이 병원학교,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방지하도록 학교 교원 연수 시 포함

⑤ 병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 소속학교 등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과 협력학교 결연에 적극 협조

⑥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공문으로 반드시 등록 해지 조치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이용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및 성적 관련

①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출석확인서 확인, 학업성적 평가는 평가 당일 재적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병원학교 또는 교육청에 공문으로 등록 해지 조치한다.

※ 학업성적 평가는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성적 처리에 준한다.

<출석인정 절차>

- o 학교장이 진단서 및 담임교사 의견을 첨부하여 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
- o 도교육청에서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기관에 등록 조치
- o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기관장은 학생의 수업 출석에 대해 출석 확인서를 각 학교로 송부하고, 학교장은 출석 확인서를 반영하여 출석 인정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무상교육 제공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또는 유급예방을 위하여 무상교육 혜택 부여 및 순회교육.병원학교.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석일수를 확보하여 상급 학교.학년 진학하도록 지원

2.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병원학교.원격수업등을 이용한 출석일수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학생 연령과 학업수준에 따라 학업중심 교육과정과 심리.정서적 적응지원의 균형 유지

○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원격수업 등을 이용하되, 담임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도우미,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 등이 일대일 상담 및 지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학년별. 과목별 진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일반학생 봉사점수제 활용, 캠프,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으로 치료효과 증진 및 학교생활 적응 도모

3.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질병 특성 및 건강상태, 병원학교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정, 보완하여 편성.운영하도록 조치

○ 학사 관리 : 병원학교의 수업 참여를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조치

- 최소 수업시간 : 유치.초등학생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1일 2시간 이상

4. 통원치료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 건강장애로 선정한 후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이를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

○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도우미제 등을 통해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 혹은 원격수업 적극 활용

○ 원격수업 운영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원격수업을 운영하여 개별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수업으로 인정

※ 건강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학을 포함하여 연중 프로그램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교육계획 기간 내 원격수업 참여는 출석으로 인정

♠ 관련업무계획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지원 업무 계획

1. 취지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의 건강장애학생에게 병원학급, 원격수업을 지원하여 학습권 보장

2.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15조, 제25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

3.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 대상
  -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 신청
  - 소속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신청
  - 병원학교에서 입급 확인서를 소속학교로 통보
- 병원학교 : 전북대학교 병원학교
-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청담당자, 병원학교장, 병원학교 담당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 병원과의 협약서 체결 : 학교와 병원과의 필요사항을 협약서로 작성
-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 : http://hoschool.ice.go.kr

4.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원격수업 수강지원 대상
  - 초·중·고 건강장애 학생
  - 만성질환 및 외상 등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어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
- 운영기관
  - 꿈사랑학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84 영남빌딩 11층(우607-842)
    전화 051-501-7867, 7868 팩스 051-501-4415

- 교육과정 운영
  - 화상강의 과목 및 수업시수

구분	과목당 주당 수업시수					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초1-3학년	2	2	2	·	·	6
초4-6학년	3	3	3	0~2	0~2	9~13
중1-3학년	3	3	3	2~3	2~3	13~15
고1-3학년	3	3	3	0~3	1~3	10~15

※ 특별활동 : 캠프활동(연 1회), 수료식(매년 2월) 및 간담회(지역별1~2회)

- 학사관리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소속학교담임, 특수교사, 사이버학교담임이 상호협력 하여 건강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화상강의 수강 관련 절차
  - 수강 의뢰 : 소속학교장→교육지원청→도교육청→꿈사랑학교
  - 원격수업 수강
  - 원격수업 수강 명단 및 철회명단 통보(소속학교→출석확인서와 함께 발송)
    ※ 꿈사랑학교→도교육청 및 소속학교
  - 행정사항 통보 : 꿈사랑학교→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소속학교
- 건강장애학생 출결관리 및 성적관리 지침

구분	병원학교	원격수업
출결관리	- 병원학교 수업참가는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확인서 확인을 통하여 출석 인정	- 교육계획 기간 내(방학 특강 포함)에 화상강의 과정 이수자는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은 원격 출석확인서 확인을 통하여 출석 인정(원격수업 기관에서 매월 초 전월 출석확인서를 해당 학교로 송부) - 최소 수업시간 : 초등학생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1일 2시간 이상 수강 시 출석으로 인정
성적관리	- 학업성취도 평가 시 가능하면 대상자의 평가 당일 학교 출석 권장 -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원학교 담당교사와 소속 학교 담임 간 협의를 통해 가정이나 병원에서 평가 - 직접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Section_1-4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1 추진목적

○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강화
○ 특수학교(급) 교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대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2 추진내용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운영 지원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활동지원단

- 지원기준 : 특수교육담당 전문직, 특수교육 현장경험이 있는 특수교육 전공 교수, 특수교육경력 10년 이상인 특수교사
- 선정방법 및 절차 : 각급학교와 전문직의 추천을 받아 도교육청에서 심의 선정
- 구성영역 및 인원 : 수업지원, 생활지도, 전환교육, 통합교육으로 구성 각 영역별 3~10명 내외 조직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위촉장 수여 및 전문성 제고 연수 시행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연간운영계획

순	절 차	시기	주관
1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구성원 안내	4월	도교육청
2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신청	4월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3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구성원 위촉 및 구성위원 연수	4월	도교육청
4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활동	5월~12월	해당학교
5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활동결과 평가	12월	도교육청

우수교원 선정.표창

- 자격 : 특수교육활동지원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공적이 현저하며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그 실적이 현저한 교사

특수교사 연구회(동아리) 조직

-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사 연구회 조직 및 운영 활성화
- 현장중심의 현안과제별 연구활동 및 결과 도출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운영을 위한 지원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참가 독려
  - 해당영역에서 전문적인 지도 능력과 소양을 갖춘 특수교사들의 적극적인 참가 독려
- 지역별 특수교사 연구회(동아리) 활성화 및 운영지원 노력
- 특수교육활동지원단을 연수 및 컨설팅 장학에 적극 활용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신청 및 활용에 적극 참가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신청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관)을 통해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② 자발적인 특수교사 연구회 조직 및 운영

-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연구 분위기 확산

③ 자발적인 수업컨설팅 요청 수업참관 기회 제공

- 신규교사, 특수학급 담임경력이 없는 일반교사, 기간제교사 등

Section_1-5 특수교육 연수 지원

1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교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대
○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연수 강화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2 추진내용

방침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연수
-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 실시
- 통합교육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위탁연수 및 자체연수(국립특수교육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실시
- 교직원 연수 시 '장애인식개선'교육 포함

특수교육교원의 연수 강화

- 자체연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북교육연수원) 및 위탁연수(국립특수교육원) 강화
- 교과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통합교육 전문성 강화
- 신규 특수교사 및 저경력 교사에 대한 연수 실시

통합학급담당 교사에 대한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실시

- 자체연수(교육지원청) 및 위탁연수 실시
- 통합학급담당 교사 대상 연수
- 장애학생의 개인적.사회적 자아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 시기 : 연중
- 방법 : 원격연수 및 집합연수
- 통합학급당 일반교원이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 기준
  - 30시간 연수 과정 2개(단 2개의 연수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실시

- 자체연수(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및 위탁연수(국립특수교육원) 실시
- 장애학생의 개인적·사회적 자아실현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역량 강화
- 시기 : 2016년 3월~12월(원격직무연수, 집합연수)
- 주관 : 원격연수-국립특수교육원부설 원격연수원 활용
  집합연수(방학 중)-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기타

- 자격연수, 직무연수(60시간 이상)에 의무적으로 특수교육강좌 2시간 이상
- 특수교육 직무연수(30시간 이상) 미 이수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의무 수강
- 특수교육직무연수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전북교육연수원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해당학교 교원들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이수

② 특수교육보조인력 직무연수를 수시로 실시

Section_1-6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 교육 강화

1 추진목적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성과 제고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 지원팀의 구성 등)

2 추진내용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학부모와 일반교육교원 참여, 충분한 안내, 의견절차 준수,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부모교육 기회 제공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시, 그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제공 강화 및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의 확대

-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및 일반교육교원 참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의 절차준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 특수교사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 권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급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 지원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②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 실시

♠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개별화교육 계획 예시자료 ♠

개별화교육 계획

1.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및 개별화교육시작 및 종결 시기

이 름		개별화교육지원팀	1학기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팀 장(교 감)	
학 년 반	학년 반	팀 원(보 호 자)	
장애유형(등급)		팀 원(진로담당)	
선정배치번호		팀 원(일반교사)	
주 소		팀 원(특수업무)	
		팀원(관련서비스)	
교육활동 방법	□시간제특수학급 □전일제 특수학급 ■전일제통합학급(완전통합)		
1학기 개별화교육 시작 및 종결시기	1학기	2016.03. ~ 2016.08.31	

2.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2학기
치료 지원	
방과후활동 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3. 현재 학습 수행 수준

	내 용
현재학습 수행수준	

4.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영 역	1학기
교육 목표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으로서 전 교육과정활동에 교육목표 · 내용 · 방법 및 평가계획의 수정 없이 적용하여 참여하고 반영함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Section_1-7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 조정 지원 강화

1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단위 학력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 조정 지원으로 학업성취도 향상

⇒ 근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2 추진내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정착

-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의무시행 특수교육대상자: 3개교과(국어,수학,영어) 전체를 해당학년의 공통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자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 특수교육대상자**

- 의무시행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장애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단위 평가 시 장애학생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 방법의 조정 적용
-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 관련 사항 규정하여 시행
-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및 평가 조정 정착을 위한 관리자 연수 제공

3 협조 및 주의사항

모든 학교

①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조정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2. 특수교육 지원체제 운영 내실화

가 목표

- 장애 조기 발견 진단 · 배치 체계 확립
- 특수교육 지원센터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다양화
- 장애학생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대폭 확충

나 추진 방향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체계 확립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지원체제 강화
- 특수학교(급) 신 · 증설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2-1	❖ 진단 · 평가 및 선정 · 배치체계 확립
2-2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강화
2-3	❖ 순회교육 운영지원
2-4	❖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2-5	❖ 특수학교(급) 신 · 증설 확대
2-6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Section_2-1 진단•평가 및 선정 · 배치 체계 확립

가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요구에 맞는 정확한 진단・평가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체계 확립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복지 증진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동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동법 제 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동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나 추진내용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성화

- 전라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성화
- 연 4회 이상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조직 구성 및 기능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준수
- **익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월별	내 용	기 간
2월	선정·배치·재배치·선정취소·재취학·유예·취소 등에 관련된 진단평가 및 기초상담 실시	2월 16일
3월	선정·배치·재배치·선정취소·재취학·유예·취소 등에 관련된 진단평가 및 기초상담 실시	3월 15일
5월	선정·배치·재배치·선정취소·재취학·유예·취소 등에 관련된 진단평가 및 기초상담 실시	5월 24일
7월	초·중학교 입학(재배치), 고등학교 입학(재배치)관련 진단평가 **※장애인 미등록 특수교육대상자는 재진단실시**	7월 19일
9월	고등학교 입학(재배치)관련 진단평가 **※장애인 미등록 특수교육대상자는 재진단실시**	9월 20일
12월	선정·배치·재배치·선정취소·재취학·유예·취소 등에 관련된 진단평가 및 기초상담 실시 초·중학교 입학(재배치) 관련 진단평가 **※장애인 미등록 특수교육대상자는 재진단 실시**	12월 6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체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별
  - 해당 지역의 병·의원, 보건소, 행정기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장애위험 아동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 장애 의심 아동에 대한 검사, 관찰, 면담을 통해 적격성 판정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진단·평가 계획 수립
    -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학교 및 유관기관에 안내
    - ·추진 계획에 따라 진단·평가위원 구성 및 위원 위촉
    - ·위촉 위원에 대한 사전연수, 검사도구 및 서류 정비, 각종 자료 수집
  - 진단·평가팀 구성
    - ·진단·평가 팀장은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를 팀장으로 함
    - ·진단·평가 팀원은 특수교사, 상담교사, 치료전문가,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육 관련 대학교수 등 장애영역별 진단 평가 전문가로 구성함
  - 사전 연수 : 진단·평가팀 구성, 진단·평가의 시행 방법, 결과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한 연수 실시
  - 검사도구 및 관련 서류 정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절차
  - 진단·평가 의뢰(접수) :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진단·평가 의뢰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평가 의뢰를 접수한 후 대상자에게 진단·평가 일시 통보
  - 진단·평가 실시 : 의뢰받은 검사(진단·평가) 실시, 기초 면접 등 실시
  - 평가 결과 안내 : 평가 결과와 관련 교육적 조치(권고사항)을 학부모에게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진단·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진단·평가 여부 판단		진단·평가 의뢰		진단·평가 실시		결과 통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학부모→ 학교→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센터	≫	특수교육 지원센터	≫	센터→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진단·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관련서비스, 순회교육 여부 등) 판단
  - 지역 내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단·평가 전문팀 구성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

보호자의 사전 동의

↓

시、도교육감(교육장)의 접수

↓

시.도교육감(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의뢰(진단、평가팀) — 즉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 30일 이내

↓

진단、평가 결과를 시、도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보호자에게 진단、평가결과 통보 — 2주 이내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선정. 배치 심사 의뢰(보호자 의견 수렴)

→ 보호자가 불복할 경우 재심청구 가능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배치 심사 심사 후 그 결과를 시、 도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 — 30일 이내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선정、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 — 2주일 이내

→ 보호자 및 학교장, 이의 신청(재심청구)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ㆍ배치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ㆍ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ㆍ평가 의뢰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 시행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또는 소위원회)에서 진단ㆍ평가 결과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법 제15조)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
  -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유의사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더라도, 학적은 일반학급에 편성ㆍ배정토록 조치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시행령 제11조)
  - 학습부진아가 학습장애아동으로 선정 배치되지 않도록 지침 준수

※ 기타 세부 사항은 2016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참고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입학 또는 재입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만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5조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6. 8. 19.)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 절차 : 학부모 요구→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정→학부모에게 통보→배치 철회(일반학생으로 간주)
- 선정 취소가 결정되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중단
- 희망에 따라 선정취소가 되었으나,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종 편의 제공 철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에 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에 대한 연수 실시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초등학교 취학 독려
  -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경우 공교육기관의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한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기능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숙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실시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병·의원,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장애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초등학교 취학 유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실시

3 협조 및 유의사항

특수학급

① 특수학급 : 장애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고려한 선정·배치 신청

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에 대한 단위 학교별 교직원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Section_2-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2 추진내용

치료지원서비스 운영 내실화

- 지원기간 : 2016. 3. ~ 2017. 2.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취학유예 아동은 지원불가)
- 치료지원 영역 및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 단위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내용과 방법 결정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의 치료지원
  -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위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치료지원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교육지원 의견 제시(치료지원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시한 교육지원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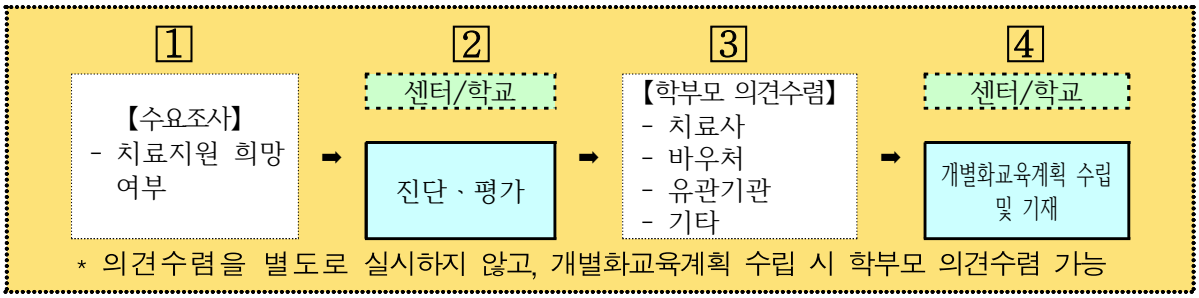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 국가면허 또는 주무부 장관 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 다음의 인력이 제공하는 치료지원 활용 가능
  ㆍ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ㆍ민간자격 소지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지원기간 : 2016 3. ~ 2017 2.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취학유예 아동은 지원불가)
- 방과후학교 운영 내용
-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 특수학교는 학교별, 특수학급은 학급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여 치료지원 관련프로그램을 개설 확대운영
- 지원기준
- 방과후프로그램당 월 50만원 지원 또는 1인당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족 지원

- 학교별.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가족지원은 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통학 지원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대상자 통학비 지원
- 제외대상 : 통학버스 이용자, 부모가 원하여 자가 통학하는 학생 등

교재ㆍ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교재ㆍ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대상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방침
  ㆍ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구축
  ㆍ교육현장의 수요 조사 후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 지원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교구,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 및 지원
-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대여 및 활용 관리

- 지원 내용 : 감각장애 거점센터 및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구비하여 특수학교(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
- 교재·교구 대여시스템 운영 : 각종 대여장부 및 신청서 구비
- 지원절차 및 방법

준비 단계		계획 단계		지원 단계		평가 단계
· 유관기관 인프라 구축 ·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	· 수요조사 분석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 및 확보	▶	· 보조공학기기 대여 · 사용점검 및 A/S 관리 · 보조공학 활용연수	▶	· 수요자 만족도 · 관리실태 점검 · 결과분석 환류

- 익산감각장애특성화센터 운영 현황

권역	센터 명	연락처	설치 장소	관할 지역
익산	익산 특수교육지원센터	831-868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75	완주, 진안, 무주

- 익산 감각장애특성화센터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시각장애 컨설팅(기존 지원 학생에 대한 사용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신규 지원학생에 대한 컨설팅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실시)
  - 시각장애 및 저시력 관련 연수 실시
  - 감각장애 특성화지원센터의 역할 및 업무 적극 홍보
  -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각종 기자재 및 교재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확대교과서 제작 및 지원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치료지원대상학생 지원 지침 숙지
- 치료 중복 지원 및 과다 지원 방지 철저
- 치료지원 지침 숙지를 통한 민원 발생 억제 노력

② 미인증사설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서류 검토

③ 방과후학교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관리 및 민원인에 대한 안내 강화

Section_2-3 순회교육 운영지원

1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교육욕구에 맞는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의무교육 등), 동법 제25조(순회교육 등), 동 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2 추진내용

다양한 순회교육 제공방안 모색

- 대상 :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재택 또는 시설 학생,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학생
- 운영형태
  - 재택순회교육 : 해당 지역 센터 순회교사 또는 소속학교 특수학급교사 실시
  -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학생 : 센터순회교사의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지원 실시
- 운영 방법
  - 순회학급편성은 한 학급당 5명 이내로 하고, 무학년제로 편성·운영함
  - 수업연한은 무상 또는 의무교육 실시 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과정 종료까지
  - 재택순회교육을 제외한 순회교육 수업일수는 해당학교 출석일수와 동일하게 적용
  - 재택순회교육 수업일수는 150일을 최소 기준으로 하며, 장애상태에 따라 최대 30일을 줄일 수 있으며, 수업일수에는 방문지도, 과제학습,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및 체험교육 등의 일수를 포함함
  - 한 학생당 방문 순회교육 횟수는 주당 2-3회로 하고, 1회 지도시간은 1~2시간으로 하며, 기타 재택 과제학습 등을 이용하여 추가 지도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은 이동거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판단으로 최대한 지원
  - 순회교육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소속학교 담당교사 및 특수교사와 수시로 상의

- 재택순회교육의 경우 순회교육대상자의 상황을 원적학교에 수시 통보
-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지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 순회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하여 선정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출석 권장

※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 특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순회교사에 대한 성추행(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순회교사 배치 및 사전교육 실시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 순회교육 담당교사와 연락체계 구축하여 순회교육대상자의 상황을 상시 확인

♠ 관련업무계획 ♠

순회교육 운영 계획

1. 목 적

가. 중도 . 중복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회 확대

나. 찾아가는 특수교육서비스 실현

2. 방 침

가.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순회학급을 설치하여 교육 실시

다.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3. 교육과정 운영

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나.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최소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다. 순회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르되 대상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 거주지, 학부모의 의견 등이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개별화교육 실시

라. 학년 . 학급 : 최초의 학년은 학교 개별화교육위원회 또는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배치하되, 무학년제 운영.

마.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자 지원

-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 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4. 생활기록부의 관리 및 기록

가. 학적이 없고,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초등과정에 입학시켜 관리함

나.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기타 종합 의견은 순회학급 담임교사가 제시 또는 평가한 내용을 기재함

5. **순회학급 비치 서류:** 순회학급 운영계획, 지도일지, 개별화교육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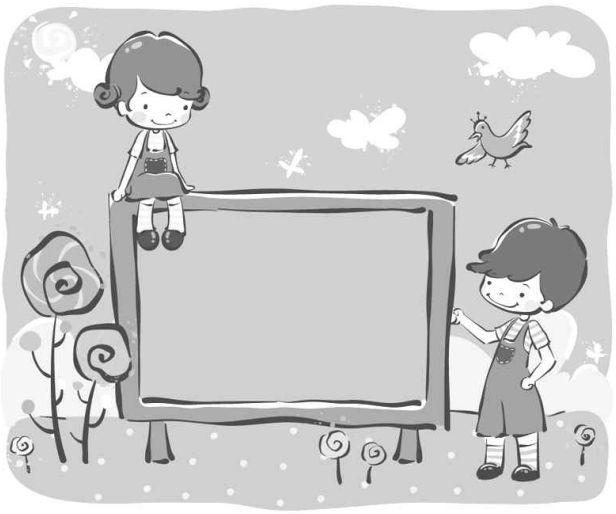

Section_2-4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1 추진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성과 제고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동법 제22조(개별화교육), 동법 제28조 (관련서비스)

2 추진내용

특수학급 특수교육보조인력 관리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도·중복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기준으로 운영
-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 보조를 담당
-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특수교육지도사에 준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이외의 업무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관리 철저
- 지원절차

학교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지도사 신청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지원 대상학생 및 학교 결정 통보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전보)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특수교육지도사 활용.관리 실태 점검

특수교육지도사 연수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지원, 신변처리, 문제행동중재 지원등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기회 확대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연수 강화(국가 인권위 권고사항)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강화(국가인권위 권고사항)

②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해 행·재정업무 역할 부여 금지

③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근무평정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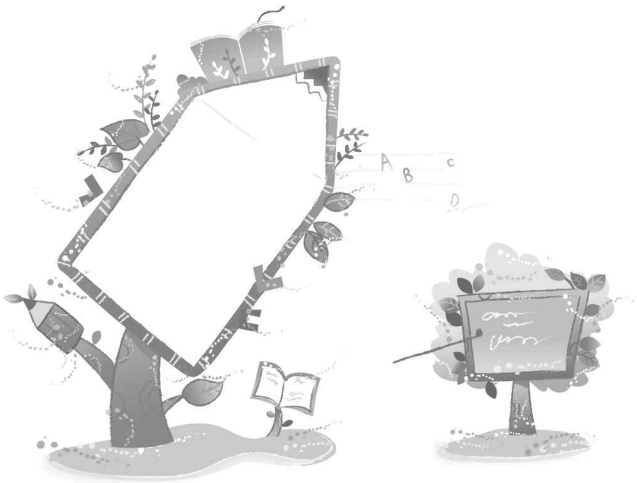

Section_2-5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 확대

⇒ 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2 추진내용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추진

- 특수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장애학생 중장기 수용계획 수립을 통한 특수학급 신·증설
- 일반학교에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문제 및 과밀학급 운영 해소
- 거주지 인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
- 2016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4학급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급	0	1	0	0	1

Section_2-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추진목적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지원,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현장 지원 확대
○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 추진내용

익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추진 계획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성화 및 협력 운영체계 구축
1) 시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운영
- 목적
① 시각장애학생의 효율적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교육지원
② 일반학교 배치 시각장애학생을 파악하고 적절한 특수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컨설팅으로 해당 학생의 교육권 확보

- 시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운영시스템(4단계)

해당학생 현황파악 → 찾아가는 교육컨설팅 → 보조공학기기 제공 및 교육환경수정 → 추수지도

2) 직업전환중심특성화센터 운영
- 지원대상: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① 장애학생 직업 관련 평가 및 진로 상담
  ②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직업관련 연수 지원
  ③ 직업전환 관련 프로그램 운영
  ④ 지역 연계 기관 협력 구축
- 지원권역: 완주, 진안, 무주

나.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단'** 운영
- 목적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관련 정보공유 및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통한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 운영형태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겸임, 지원센터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 협의 운영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역량 강화
- 센터 자체 연수 실시 및 선진지 견학 등 추진

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센터 기능에 따라 관련 기관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간 업무 협력으로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도모
- 장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순회교육 지원 내실화

가.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에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순회교육대상자는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장애정도,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가급적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다. 지원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전담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사와 협의하여 순회교육계획(수업내용, 수업일수, 시간표 등 포함)을 수립하여 협력 지원**
- 주 2회 이상 방문수업을 원칙으로 함(최소 120~180일 수업일수 확보), 방문교육, 체험학습, 과제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라. 순회교육은 **유.초.중등별 자격소지자가 지원**

3.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

가. 진단.평가 위원회 구성

- 특수교사, 치료사 등 진단·평가 전문가로 구성
- 수시, 정기 진단·평가 체계 구축
- 의뢰 학생의 지능, 학습수준, 행동 특성 등 학생의 교육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직업교육, 순회교육,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 지원 여부 등 기재
- 진단·평가 결과 누적관리
- **진단·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교 배치(통합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에 대한 상담 실시**

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실시

- 주관: 익산교육지원청
- 개요: 진단.평가 위원회 위원 사전연수
- 기간: 진단.평가 위원회 조직 후 1달 이내(2~3월 내 실시)
- 내용: 검사도구 활용 및 결과 분석, 진단.평가 보고서 및 결과서 작성요령 등 연수 실시

3. 통합교육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은 기존의 개별수업지원 중심에서 통합교육지원내용을 중심으로 내실화 운영
- 지원내용 : 일반학교 통합교육계획 수립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통합학급 교사에게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자료 지원, 문제행동 지도 및 생활지도 지원, 특수교육 관련 상담 기타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관련 전반적인 사항

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향
-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이중.중복 지원 지양

다. 통합교육 관련 연수 및 동아리 운영 지원
- 지역 내 통합학급 교사, 관리자 대상 연수 실시
- 통합교육 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 지원을 통해 통합교육 관련 연구 분위기 조성, 다양한 자료 개발.보급

4. 교수.학습활동지원 활성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동아리 운영
- 스포츠 클럽 및 음악(중창단) 동아리 운영
- 센터 내방 및 외부 프로그램 운영(외부 프로그램 이용 시 지역 내의 유관기관 적극 이용)

나.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초, 중, 고 여름, 겨울 꿈자람학교 운영
- 특수학급 계절제 방과후 프로그램과 이중.중복지원 지양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방학 프로그램은 특수학급의 특기.적성 위주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고, 운영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
  ※ 1회성, 낭비성 체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1가지 주제를 설정하여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활동자료 개발 및 보급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특수교육 활동자료 개발 및 보급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교육자료 공유 및 보급 활성화

5. 일반학교 대상 진로·직업교육지원

가. 일반학교 중.고등학생 대상 직업평가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직업평가 지원

나.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권역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체험활동 협력 운영
- 지역 내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프로그램 영역 선정
※ 센터 내부 또는 외부 위탁형태의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
- 직업거점학교, 산업체와 연계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단위학교간의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협의를 통해 전체 운영에 관련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장애 영·유아교육지원 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 연계한 조기발견 및 선별검사 지원체계 구축, 유치원 의무교육 홍보
-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지원 실시 : 가정방문 및 보육시설 방문,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조기중재 체제 구축
- 장애 영·유아의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발육정보, 신변처리기술, 의사소통기술, 운동능력발달, 치료지원, 수술이나 재활에 대한 정보, 보조공학지원 등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언어치료 등 전문적인 연수 실시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가. 치료지원

- 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내방, 순회 치료지원 실시
- 치료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치료지원의 질 관리
- 교육청 치료지원 바우처(월 10만원 지원), 시.군 재활 바우처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사항은 '2016년 치료지원 계획' 참고

나. 가족지원

- 상담, 부모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부모교육의 경우 1회성 연수 지양, 계획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족캠프(연 1회 이상)는 특수교육 관련 정보제공, 자녀 양육 및 진로지도 방안, 집단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

다. 보조공학 기기 및 교재.교구 대여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8. 상설모니터단 운영

가. 상설모니터단 구성 : 센터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특수학교(급)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필수 인원으로 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

나. 주요역할

1)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해 활동

2) **장애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3) 장애학생의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

- 장애학생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제 확립
- 매월 1회 지역내 학교(특수학교, 일반학교)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 실시

※ 학부모와 지역사회 내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모니터단」이 유기적 연계 및 협력

※ 학기별, 분기별 대상 장애학생 상시모니터링 결과 누적 관리

4)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

※ 상황발생 시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관내 관할기관 및 Wee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와 인권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중점사항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2016. 2. 16.)
- 지역 내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등 교원 자원 활용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 순회교육 제공, 진단 평가, 상담 및 각종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및 현장 점검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부모 대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3. 장애학생 인권우호적 분위기 조성

가 목표

-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강화 및 보호
- 통합교육 체제 정교화

나 추진 방향

-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보호
- 장애학생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
- 일반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 통합교육 토대 구축 및 시스템 정교화

3-1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교육 강화
3-2	❖ 예 · 체능 활동 지원 강화
3-3	❖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3-4	❖ 장애학생 안전 강화
3-5	❖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철저

Section_3-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교육 강화

1 추진목적

○ 장애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 안전지원,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강화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동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동법 제21조 (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복지법 제10조(국민의 책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2 추진내용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일반학교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장애인 인권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실시**

※ 전북교육청 장애인 인권교육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보급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실 컨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 이야기 등 활용

- 특수학급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실시
  - 장애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 실시

※ 전북교육청 장애인 인권교육 자료, 기 보급된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교육자료(5종: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정서장애, 학습장애) 활용

-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 인권교육(장애이해 교육 포함) 강사단 활용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 규정 마련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체계 구축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수시 성교육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성교육 시 활용

- 특수교사의 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장애학생 성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보건교사)의 협업체계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설치·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상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활성화

- 상설모니터단 구성 : 3월 초
- 협의회 개최 :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
- 현장점검 : 매월 최소 1회 이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장 직접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교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안전지원, 미담사례 등
- 결과보고
  1) 매월 30일까지 모니터링 결과를 도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고
  2)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권 침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안 파악 시에 즉시 보고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및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계획 수립
-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지역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체계 전달

※학교폭력.성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 담당자,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은 상설모니터단에서 지원

3 협조 및 유의사항

특수학급

①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보고
- 학교폭력·성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 담당자,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은 상설모니터단에서 지원

②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및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③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철저

④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⑤ 특수교사의 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및 참여

♠ 관련업무계획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업무 계획

1. 취지

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도모

2.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3. 장애인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가. 시기 : 2016 3월~10

나. 방법 : 장애인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가.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상설모니터단」설치 운영

나. 매월 최소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지역상설모니터단은 매월 30일까지 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모니터링 결과 제출

다. 장애학생의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역 내 학교 컨설팅 활동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부모 또는 장애학생 교육 시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상설모니터단의 분야별 전문가 강사 활용 등

라. 각급학교는 장애학생 대상 매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타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성폭력 및 성추행 대처 방법 지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성폭력 또는 성추행 피의자로 오해받지 않도록 지도

마. 각급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및 홍보 철저

바.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자료 공유

사. 각급학교는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nise.kr)에 탑재된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장애학생 성교육시 활용

아. 각급학교는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정착화

※ 기존 인권교육 활동 자료 적극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이야기 등

자.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 장애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 실시 :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교육자료 보급
- 일반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보급

차. 각급학교는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카. 각급학교는 장애학생이 학교생활과 관련해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예 : 건의함 설치 등)

Section_3-2 예·체능활동 지원 강화

1 추진목적

○ 장애유형·장애정도에 적합한 예・체능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개인별 맞춤형 예·체능활동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 **근거 :교육기본버 제 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 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 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2 추진내용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 현장학습 등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일반학생과의 통합참여 권장
- 특수교육지원센터 동아리(중창단,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창단 운영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자에 한하여 20명 내외로 운영하며 차후 변경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주 1회 이상 연습을 실시하며, 대회 참가전 등 필요에 따라 수시 연습 실시
- 전북 특수학교(급)학생 예능 발표회 참여 예정
- 2015년도에 활동하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임

특수교육대상자 스포츠 클럽 운영

- 장애학생의 체력증진 및 특기.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 2개 프로그램을 연간 진행하며 1달에 2~4회정도 활동함
-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며, 적성에 맞고 해당종목에 특기를 보이는 경우에는 선수로 육성할 수 있음(전문가와의 협의 필요)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 참가 및 참관 협조

② 장애학생 체력증진과 즐거운 생활을 위한 1교 1운동 운영

Section_3-3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1 추진목적

○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인식개선교육)**

2 추진내용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이해 내용 지도자료 활용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대한민국 1교시) 수업 실시
  - 장애이해 드라마 활용 장애인식 개선 수업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nise.kr) 장애이해교육사이트(edu.knise.kr)활용
- 장애인식개선행사 개최
  - 계획 수립하여 다양한 예술행사 개최
  - 행사 후 설문조사 및 감상문 작성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장애인식 변화 조사
-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추진
  - 특수학급별로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급)와 공동 활동함으로써 모든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 도모
  -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하는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 일반학교·특수학교·장애인시설 자매결연 권장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및 성교육 실시

- 대상: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 각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실시(관내 모든 사립유치원 실시)
- 초.중.고등학교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성교육 실시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②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 실시

③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정착

Section_3-4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특수학급과 지역사회 기관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학교 및 방과후 성폭력 피해예방

2 추진내용

장애학생 등·학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급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인력 배치.운영,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개선

학교주변 위험 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악취, 소음, 먼지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현장실태를 고려한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한 상활별 안전교육 수시 실시

※「119 다매체신고 서비스」활용 방법 교육

- 재난 발생 시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검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② 학교장 등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수학급

①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 운영, 맞춤형 재난대응 지원방안 마련, 학교 안전지킴이 활대 등 장애학생 안전 강화

②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으로 장애학생 안전보호, 교통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추진

③ 특수학급 교직원 안전관련 연수 및 안전관련 예방교육 운영 실태 점검

Section_3-5 각급학교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철저

1 추진목적

○ 각급학교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 추진내용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관내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보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기관 확대에 따른 홍보 확대, 예산확보 및 이행 철저

※ **(벌칙조항)** 동법 제49조 :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의무기관 및 내용**

- (적용범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단계적 적용

구분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09.4.11	ㅇ국·공·사립특수학교 ㅇ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유치원 ㅇ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학교	ㅇ공공기관 ㅇ특수학교 ㅇ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유치원 ㅇ특수학급 설치 국·공립학교
’10.4.11		ㅇ공공도서관
’13.4.11	ㅇ평생교육시설 ㅇ교육훈련기관, 연수기관 등 ㅇ직업교육훈련기관 ㅇ사립 유치원	ㅇ평생교육시설 ㅇ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연수기관 등 ㅇ사립 유치원

(제공내용) 정당한 편의제공 세부사항

영 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교 육 (법 제2절,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 및 별표2)	o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o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학습시설 및 교육활동 공간에서 이동·접근하기 위한 설비 및 이동수단
	o 교육보조인력 배치	o 교육보조인력 배치(필요시)
	o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o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o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o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o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o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o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o 교육과정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o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o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o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o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정보 접근· 의사소통 (법제21조,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o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o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o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o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o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강화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자료(2016 장애인편의시설 담당자 연수교재)
  (다운로드 경로 :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자료실(243번))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이행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노력

  - 장애인 편의시설(재배정 사업) 확충을 위한 연차적 재원확보 노력

  - 단위학교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설치토록 한 의무시설(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등) 예산 적극 확보

  ※ 관련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편성 안내(교육혁신과 - 28023, 2016.12.8.)

  [2016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2016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 예산의 조기집행 및 다른 시설사업과의 연계집행을 높이기 위하여 2016. 1월중 예산재배정

  - 관리자 연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교육 강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6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반영

- 관련부서와의 협조사항

  -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과 및 집행부서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4.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강화

가 목표

- 장애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

나 추진 계획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활성화와 기관 간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성과 제고
-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4-1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 직업교육 내실화
4-2	❖ 장애학생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지원

Section_4-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1 추진목적

○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직무 역량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제고
○ 지역사회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기회 확대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동법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2 추진내용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및 특수교사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지원 내실화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지역사회 사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지원
- 교육기관 내 희망드림 직업실습 참여
  - 직무 개발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기관 내 장애인 고용 창출
  - 일반학교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교원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 실시 및 일반교원의 역할 확대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전주,군산, 익산 3개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사의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직업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나이스의 진로희망사항을 활용하여 학생의 특기와 흥미, 진로희망을 반영한 직업 교육과정 운영
- 직업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대
  -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과정을 유연성 있게 운영

- 직업교육과정 작성 시 지역사회 사업체의 분포, 취업가능 직종 및 직무 분석, 학생 분석 등을 토대로 취업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구성·운영(현장실습 계획 포함)
- 현장실습의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시간 등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으로 인정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 협력 수업 등 협업체계 구축 강구
- JOBable 활용 등 진로·직업교육 정보 제공 및 이력 관리 강화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 취업.창업교육 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및 지역 경제단체 등과의 지역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
- 특수교육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직업능력개발센터 및 대학 등과의 개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유관기관의 역할분담.협력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기관 간 다양한 직업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공유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 우수 사례 발굴.공유
- 유관기관과 연계한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연계하여 직업능력평가 실시, 진로 및 취업 지원
  - 보건복지부의 '복지일자리'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워크투게더 사업' 등 적극 활용
  - 관련 사이트 활용 : 워크투게더(장애인취업정보 - www.worktogether.or.kr), JOBable(장애학생 진로、직업정보시스템 - www.jobable.kr)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 취업률 외에 다양한 개인별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관리 후 그 결과를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에 반영
-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최소 3년까지 사후 관리 실시
  - 취업자에 대한 적응지도, 상담, 취업유지 여부 확인 등 장기적인 고용 안정 관리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②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③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및 학칙 반영**

④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대비 지도 강화 : 2016. 10월 충남 개최 예정

- 감각장애, 지체장애 학생 대상
- 2014년 제주 대회 개최 종목 참고

♠ 관련업무양식 ♠

현장실습의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시간 등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으로 인정

<학칙예시>

제 12 장 현장체험학습 및 직업현장실습

제34조(현장실습)① 학교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에 의거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 사업체 등의 의견과 여건을 고려하여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사업체파견 현장실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체파견 현장실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 및 학생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교내활동, 현장체험학습, 직업탐색활동, 특정직무체험학습, 사업체 견학, 사업체파견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실습을 운영한다.**(활동유형 및 인정범위)**
④ 학교 및 학생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고 다음 각 호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합하여 수업으로 인정한다.(인정절차 및 인정시간)**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교육과정활동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2. 보호자가 현장실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현장실습. 단, 현장실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현장실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호자가 사업체파견 현장실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사업체파견 현장실습.

⑤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하 **'사업체파견현장실습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사업체파견현장실습운영규정' 에 필요한 내용
1. 사업체 출근상황(지각, 지참, 조퇴, 병결 등)
2. 현장실습 과제 수행에 대한 태도
3. 담당교사의 방문관찰 결과. 사업체 평가결과
4. 계약기간 만료 전 복귀
5. 계약관련 서류 등등

<내부결재 예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익산○ ○고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1. 관련: 교육지원과-12345(2016.00.00)

2. 2016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교학생의 인턴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목 적	직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돕기 위해 학습의 장을 취업과 연관된 지역사회의 일자리로 확대하여 실습을 통한 실제적인 경험을 얻게 하고 졸업 후 사회로의 전환을 돕는다.
프로그램	장애학생지원사업
참가학생	3학년 9반 24번 ○○○
실습장소	익산희망요양병원
실습업무	환자 수송 지원 및 병실청소
실습기간	▪2016.07.12. ~ 2016.08.20. ▪월요일~금요일(주5일), 13:30~17:30(1일 4시간)
출퇴근 방법	▪ 학부모의 지원을 받아 실습장까지 개별 통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석 및 수업인정	▪ 출석 및 수업으로 인정(관련: 익산00학교 학칙 00조) - 현장실습 참여 시 이수시간은 통합학급 시간표의 시간으로 대체하며 해당교과의 수업시수로 인정
기 타	▪ 본 프로그램은 익산교육지원청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한다. ▪ 현장실습에 관련된 안전지도 및 사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 ▪수습기간동안 직무지도원이 학생의 실습지도를 보조한다.

붙임 1. 직장체험 및 인턴십 동의서 (○○○)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끝.

<직장체험 및 인턴십 동의서 양식 예시>

현 장 실 습 파 견 동 의 및 서 약 서

소속	고등학교	학년 · 반	3학년 9반	성명	
실 습 산업체명	이마트 익산점			전화	
소재지					

위 본인과 보호자 _____는(은)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중인 학생으로서 교칙을 준수하고 아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선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 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지 않겠습니다. (무단퇴사 및 무단이탈 : 학생선도 규정에 의거 처벌함.)
4. 현장실습 기간 중 출 · 퇴근 및 기타 이동 시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지겠습니다.
5. 현장실습 기간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산업체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지겠습니다.
6. 현장실습 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실습에 불응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보호자
현주소 익산시 00000동 199-1	현주소 익산시 000003동 199-17
성 명 _____(인)	관 계 _____
	성 명 _____(인)

2016. . .

○○ 고 등 학 교 장 귀 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Ⅰ.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9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직무능력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의미한다.
   나. “교내 체험형 현장실습”이란 학교 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다. “교내 일자리 참여형 현장실습”이란 복지일자리, 희망드림 직업실습 등 학교 내에서 급여를 받으며 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라. “교외 체험형 현장실습”이란 교외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마. “교외 일자리 참여형”이란 교외업체에서 급여를 받으면 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3. (방법) 현장실습은 교내형(체험형, 일자리참여형), 현장형(체험형, 일자리 참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간제, 전일제, 방학 중 인턴십, 학기 집중이수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4.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학교는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 내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7인 이내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기관 선정 심의, 학생지도 및 현장실습 기관 점검 등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Ⅱ. 현장실습 운영 계획

5. (현장실습 운영 계획)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① 학교는 매 학년도 초에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기관 담당자와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6.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는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이 전학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①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② 현장실습의 이수 단위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 등과 협의를 거쳐 적정한 이수단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 부득이하게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해당 교과의 이수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적정한 방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현장실습의 운영

7. (현장실습 실시)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외부형 현장실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내형 현장실습으로 실시할 수 있다.

8. (현장실습 운영 시기) 현장실습은 학교의 특성과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직무 체험, 전일제, 단기집중 현장실습의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포함하여 수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일자리 참여형 현장실습의 경우는 학교에서 관련 지식과 실무 등을 배운 후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2학기에, 전공과의 경우 1학년 1학기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청 승인을 받도록 한다.

9. 학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현장실습 운영과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가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선정한다.

① 학교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산업체를 방문하여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산업체의 역량 등 교육적 측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현장실습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근로기준 준수, 현장실무 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방문한 사업체가 '현장실습 제한 기준(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심의한다.

10. (현장실습 협약) 학교는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① (협약) 일자리 참여형 현장실습의 경우 학교장, 학생 및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실시 7일 이전에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현장실습 협약 시 현장실습 기관의 장과 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학생의 안전과 근로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실습 기관의 장은 근로계약 결과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지원) 학교는 현장실습 협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학생 보호자에 정보 제공) 학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Ⅳ. 현장실습 학생 지도 및 감독

11. 교육청은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행·재정 사항을 지원하고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 등을 위한 학생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전 교육) 학교는 학생이 현장실습 실시하기 전에 기관 소개, 산업안전보건, 근로관계법, 직업윤리의식, 학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현장방문지도)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이수 태도, 학생 건강, 현장실습 협약의 준수, 산업체의 산업안전보건의 예방과 근로환경, 근로기준 준수 등을 지도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도 결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습계획이나 협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실습 기관과 협의하여 실습내용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생 보호) 교원과 학생은 현장실습 기관이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에 의한 근로기준 위반과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에 상담 및 신고를 하여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⑤ (현장실습 기관 지원) 학교는 실습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 지도를 위해 현장실습 기관 담당자를 (가칭) ‘산학협력 교사’ 등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2.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등과 협력하여 학교별 현장실습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기준 준수 등의 지도·감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기준 준수 대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13. 학교는 현장 일자리 참여형 현장실습 복귀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① 현장 일자리 참여형 현장실습 중, 학교로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은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는 복귀 학생의 상담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Ⅴ. 현장실습의 평가

14.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과 학교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학생 평가) 학교는 현장실습 활동에 대해 학교 또는 현장실습 기관, 학교와 현장실습 기관이 공동으로 평가를 하도록 한다.

② (교외형 현장실습의 평가) 현장실습의 출석, 태도, 일지, 현장실습 기관 담당자의 평가, 학교별 자체 양식에 의한 현장실습 결과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학교 자체 평가) 학교는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결과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교육청의 결과 보고) 교육청은 학교가 제출하는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교육청과 일자리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

⑤ 교육청은 학교에서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차년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 이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률 제10776호, 2011.06.07.)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7호, 2013.03.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82호, 2013.03.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3호, 2013.03.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03.23.) 및 학교 교육과정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Section_4-2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 추진목적

○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들에게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 확대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교과부 특수교육지원과-4496, 2010. 9. 17.),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침(2012.6.13.)

2 추진내용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입학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전문대학협의회 홈페이지 적극 활용
- 고등학교 장애학생 진학상담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하고, 대학생 멘토 네트워크 지원 권장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의 직업훈련프로그램(다함께 홈런!)을 통하여 장애성인들에게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마련
- 장애성인들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여가생활에 대하여 알고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

3 협조 및 주의사항

특수학급

①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안내 협조

Ⅷ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Section_1 교육부 및 국립특수교육원 행사

가. 2016년 특수교육정보화 및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 대　　상 :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 장애학생 학부모
- 일　　시 : 전북대회(2016. 6월 예정), 전국대회(2016. 9월 예정)
- 장　　소 : 더케이 서울호텔
- 근　　거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 7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다. 2016년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 일　　시 : 2016. 10월(예정)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충남교육청
- 대상영역 : 감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
- 참가대상 : 특수학교(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급(고등학교)

다. 2016년 제2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행복한 꿈을! 문화로 날개를)

- 일　　시 : 2016. 6. 16(목) ~ 6. 18(토)
- 장　　소 : 대구 EXCO (예정)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참가대상 :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일반인 등
- 주요내용 : 문화·예술분야 경연 및 공연

Section_2 전라북도 특수교육관련 행사

가. 2016 전북특수교육계획 설명회

- 대　　상 : 특수담당 전문직, 특수학교(급)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 일　　시 : 2016. 2. 4.(목)
- 내　　용 : 2016 전북특수교육운영계획
- 장　　소 : 도교육청

나. 2016 특수교육이해를 위한 관리자 연수

- 대　　상 : 유·초·중·고등학교장
- 일　　시 : 2016. 4월 초순/ 9월　예정
- 내　　용 : 장애인권교육, 통합교육 등
- 장　　소 : 전북교육문화회관

다. 2016 장애학생 해외현장체험학습

- 대　　상 :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교사
- 일　　시 : 2016. 5월(예정)
- 내　　용 : 학부모와 함께하는 장애학생 해외 현장 체험
- 장　　소 : 미 정

라. 통합학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 대　　상 : 통합학급 담당교사 1,000명
- 일　　시 : 2016. 6월(예정)
- 내　　용 : 장애학생 이해와 통합학급 운영(원격연수)

마.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 대　　상 : 특수교육보조인력
- 일　　시 : 2016. 8월(예정)
- 내　　용 : 특수교육지도사의 자질과 역할

바. 전북 장애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

- 일 시 : 2016. 10월(예정)
- 장 소 : 전북교육청 중회의실(예정)
- 대 상 : 교육지원청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급) 담당 교사 등

사. 2016년 특수학교(급) 학생 예능발표회

- 일 시 : 2016. 10월 초순(예정)
- 장 소 :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 주 최 : 전라북도교육청
- 참가대상 : 특수학교학생, 특수학급학생, 교원, 학부모

아. 전공과 학생 전형방법 교육감 승인 신청

- 대 상 : 전공과 설치 학교
- 제 출 일 : 2016. 11월
- 근 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

Section_3 기타 행정사항

가. 2016 특수교육 운영계획서 수립

- 대 상 : 교육지원청
- 내 용 :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 계획 수립 및 연수 실시
- 시 기 : 2016. 2월 중

나. 201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제출

- 대 상 : 교육지원청
- 내 용 :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 계획 수립 계획서 2부 제출
- 제 출 일 : 2016. 2. 25.(목)

다. 2016년도 특수교육 통계 조사

- 대 상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각급학교
- 내 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기관 및 교원, 관련서비스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현황
- 방 법 : 조사 자료에 대한 검수 철저 및 기한 준수
- 제 출 일 : 2016. 4월 중

라. 장애인식개선 사업 계획서 제출

- 대 상 : 교육지원청
- 내 용 : 지역실적에 맞는 장애인식개선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
- 제 출 일 : 2016. 4월 중

마. 연차보고서 작성자료 제출(정기국회 보고용)

- 대 상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각급학교
- 내 용 : 특수교육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국회 제출

- 방　　법 : 조사 자료 확인 및 점검 철저
- 제 출 일 : 2016. 7월 중

바. 특수교육대상자 질병예방 관리 철저

- 대　　상 : 시.도 특수교육대상자
- 내　　용 : 장애영역과 정도에 따른 예방 관리 계획 수립 추진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발생 시 보고 철저

특수교육 관련 법령 안내

□ **법제처 : http://www.law.go.kr/**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장애인복지법

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마당-법무행정-교육혁신과에서도 검색가능)

memo

2016 익산특수교육운영계획

발행일 / 2016년 2월 17일
발행처 / 익산교육지원청

본 자료는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busongjiwon.or.kr)의
공지사항에 탑재되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